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9호: 2023년 9월

mazars

Contents

- 3**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세법 개정안

- 8**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시급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 10** 회계감사 업데이트
XBRL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도입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는 연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되는 사항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업데이트

법인세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해 지분율 조건을 5%에서 2%로 완화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현행	개정안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배당기준일로부터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배당기준일로부터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의제배당소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의 수입배당금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추가)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추가) 3% 재평가적립금(합병 · 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
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과약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등에 임직원이 국외
지배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의 행사 또는 지급

1) 국외지배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 ·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 ·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 · 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외지배
주주 중 일부

2) 주식기준보상 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주식기준보상 부여 · 행사 ·
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해외신탁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며, 거주자·내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해외신탁: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당 1회의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의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신탁재산가액: 시가 또는 취득가액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합니다.

현행

1.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 제출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통합기업보고서	500억 초과 대규모 법인
국가별보고서	연결제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2.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 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 기업 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제출

개정안

1.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 제출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통합기업보고서	500억 초과 대규모 법인
국가별보고서	연결제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2.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 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별도 제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기존의 대규모법인 제외항목 삭제
 - 대규모법인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를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제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그 외 세법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사항이 신설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19%의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 (6~45%) 선택 가능
 -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신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 (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변경)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임금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5% 인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임금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2.5%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060,740원
인상율	2022년 대비 5.0% 인상	2023년 대비 2.5%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2023년 7월 적용)

-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2년 연말정산 소득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	2022년 7월 ~ 2023년 6월	2023년 7월 ~ 2024년 6월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회계감사 업데이트

XBRL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도입

2023년부터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XBRL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 3분기 보고서부터 상장 금융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의
XBRL 본문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XBRL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도입

비금융 상장법인은 올해 연말 사업보고서부터 본문뿐 아니라 주석에도 XBRL을 적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업들은 XBRL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개요

1) 기본사항

- XBRL은 복잡한 기업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성, 교환, 비교 될 수 있도록 기업보고(Business Reporting) 영역에 XML을 적용한 표준 포맷
- 기업의 재무제표 및 주석에 표준화된 계정체계(taxonomy)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적용회사의 CoA(Charter of Account)를 통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계획

항목	상세내용	
도입시기	2023년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중 IFRS 적용 법인	
회계기준	K-IFRS	
규제기관	금융감독원	
제출보고서	연간 / 분기 보고서	
제출범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금융업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재무제표 본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장사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회계감사 업데이트

XBRL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도입

2. XBRL로 인한 영향

- 1) 공시업무 시간의 증가
 - XBRL 데이터에 대한 재무수치 및 Taxonomy의 정합성 검증시간 증가
 - 공시일에 임박하여 재무제표 및 주석의 변경사항 발생시, XBRL 데이터 업데이트 시간추가 소요
- 2) 공시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 XBRL 작성 규칙과 Taxonomy의 속성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시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 공시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보고서 정정공시 리스크 존재
- 3) 정보이용자 증가
 - XBRL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감독기관의 감리, 감독 등의 모니터링 효율화
 - 투자자 및 정보 이용자의 재무데이터 활용 증대

3. 필요사항

- 1) XBRL공시 관련 위험의 감소
 - XBRL 작성 규칙과 Taxonomy의 속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투입으로 완전하고 정확한 공시 지원
 - 높은 수준의 표준 Taxonomy 준수율 달성을 통한 오류 발생 위험의 감소 (필요시 XBRL 업무관련 outsourcing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
- 2) 신속한 업무수행 및 교육
 - 사전 structuring 업무 수행을 통한 XBRL 재무제표 작성 시간 단축 및 공시기한 준수
 - 교육을 통한 XBRL 관련 자체 인력 양성



핵심 지표

주요 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3.1%
3000억원 초과	26.4%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0%	4.0%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9% + (0.25%~0.85%)	0.9%
산재보험	0.7% ~ 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35% ~ 28.85%	월 평균보수의 약 9.4%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7,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30,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7,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3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정상안, 박동원, 김양규,
장유미, 김은유, 정한움